

【제1주제】

산재보험제도 발전의 지향점

이 상 석

(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)

목 차

I. 산재보험 환경변화	5
II. 산재보험제도의 개요	6
1. 산재보험 적용대상	6
2. 적용근로자	6
3. 보험료 징수	7
4. 보험급여	8
III. 산재보험의 현황과 과제	9
1. 현황	9
2. 과제	10
IV. 정책방향	12
1.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	12
2. 고용·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체계 개선	13
3. 산재보험급여제도 합리적 개선	14
4.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강화	15
<참고> 산재보험 관련 고시 현황	17

I . 산재보험 환경변화

○ 1964.7.1부터 시행된 산재보험제도는 그동안('04.7.1 40주년) 적용확대, 업무영역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

- '64년 500인 → '72년 30인 → '92년 5인 → '00.7월 1인이상

〈 산재보험 연도별 적용규모 확대과정 〉

'64	'65	'66	'67	'68	'72	'73	'76~'81	'82~'91	'92	'96	'98	'00.7
500인	200인	150인	100인	50인	30인	16인	5~16인	5~10인	5인	5인	5인	1인

- '86년 재해예방·근로자 복지증진사업, '99년 재해근로자의 재활·사회복귀 촉진사업을 산재보험사업에 추가

○ 그러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작업·고용형태의 다양화,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등 환경변화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험의 역할 확대 요구

※ 상용직근로자비율 : '97년 54.3%→'03년 50.7%(통계청, 고용동향)

※ 2000년 고령화사회(65세이상 인구비율 7%)로 진입이후 2019년에는 고령사회(14%)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

○ 산재보험제도도 환경변화와 서비스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제도적 시스템 모색이 필요함에 따라

- 올해 6월 『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』를 구성, 제도전반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하여 “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”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

※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추진

Ⅱ . 산재보험제도의 개요

1. 산재보험 적용대상

- '00.7.1부터는 일부 소규모를 제외하고는 1인이상 전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포함
-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가입 가능(임의가입)
 - ※ 적용제외 : ① 5인미만 농림어업(벌목업 제외), 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, ③ 공무원연금법·군인연금법·선원법 등 타법령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, ④ 가사서비스업, ⑤ 상시근로자 1인미만 사업
 - '05년부터 2천만원 미만 면허공사, 5인미만 법인 농림어업 적용

2. 적용근로자

-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,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규·비정규, 일용, 시간제, 내·외국인 구분없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
- 당연적용 대상임에도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더라도 보상을 실시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보험료, 보험급여 등을 징수
- 특례적용 대상자('98년부터 시행)
 - 현장실습생('98.1.1부터 시행, 강제가입)

-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은 산재보험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
 -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, 지급받은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에 해당 사업장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납부 및 보상
- 해외파견자('98.1.1부터 시행, 임의가입)
-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도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
 -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, 임금총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험료율('04년 : 14/1000)을 적용하여 가입
- 중소기업사업주('00.7.1부터 시행, 임의가입)
-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, 여객·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자영업자(화물지입차주, 개인택시 등→'05년부터)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 가입 가능
 - 적용임금(노동부고시, 7등급)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(해당사업장의 보험료율 적용)하고 선택임금에 따라 보상

3. 보험료 징수

- 보험료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구분하는데,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위하는 것이므로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
- 매 1년간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(개산보험료)을 매년도 초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게 신고·납부한 후
- 다음연도에 전년도 1년간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(확정보험료)하여 다음연도 초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납부 또는 반환
 - ※ 개산보험료는 연4회 분납이 가능하며, 납부기한내에 일시로 납부으로 납부할

경우 5% 공제

⇒ '05년부터는 기업의 결산시기를 고려하여 개산·확정보험료 신고·납부기한을 3월말까지로 연장(국가·지자체의 경우 확정보험료를 당해 보험연도말까지 신고·납부 가능)

4. 보험급여

사 업 명	내 용	
급여 종류	요양급여	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·질병에 대한 진찰, 수술, 입원, 간병 등에 소요된 비용 전액 지급
	휴업급여	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평균 임금의 70% 지급
	장해급여	치료후 장해가 남게될 경우 장해정도에 따른 소득 감소분 지급(1~3급은 연금, 4~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, 8~14급은 일시금)
	유족급여	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, 자녀 등 유족에게 연금(50% 일시금, 50% 연금 가능) 원칙이나, 연금수급자가 없거나 수급자가 외국거주 등의 경우엔 일시금으로 지급
	간병급여	재해근로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경우 지급(상시·수시간병급여)
	상병보상 연 금	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 폐질정도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연금으로 지급(1급 329일분, 2급 291일분, 3급 257일분)
	장 의 비	사망한 재해근로자의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

Ⅲ. 산재보험의 현황과 과제

1. 현황

- 2000.7월부터 1인이상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각지대 존재
 - 소규모 건설공사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위험작업 자영업자 등
 - ※ 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골프장경기보조원 2.5만명, 보험설계사 20만명, 학습지교사 15만명, 레미콘지입차주 1.3만명 등 71만명
 - ※ '05년부터 화물지입차주·개인택시업자 등은 임의가입 가능
- 장기요양, 연금수급자 증가('00.7월 유족연금의무화) 등으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이 급격하게 증가
 - ※ 5년이상 요양환자 : '99년 8.6%→'02년 12.7%→'03년 11.4%
 - ※ 보험급여 지급액 : '00년 14,563억원→'02년 20,203억원→'03년 24,818억원
 - ※ 연금지급액(장해연금+유족연금+상병보상연금) : '00년 2,146억원→ '02년 3,396억원→'03년 4,156억원
-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·보완하고 있으나, 근골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병에 대해 세분화되거나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노사로부터 제기
 - ※ 뇌혈관·심장질환('96), 진폐합병증 확대및 소음성난청 기준 완화('97), 자살·휴게시간 및 행사중 사고('00), 간질환·진폐등급 확대 등('03)
 - ※ 현재 근골격계질환은 시행규칙 별표1의 『5.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, 6. 진동장해, 7. 요통』에 인정기준 명시

- 산재장해자의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직업훈련,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직장복귀율은 40%수준

※ 산재근로자 재취업율 : '00년 37%, '01년 42%, '02년 40%, '03년 41%

2. 과제

- 일하는 자는 누구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
- 요양업무처리절차 개선,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·보완 등을 통해 요양관리의 합리화
- 사업주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험관리·운영의 효율성 제고
- 장기적인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, 재활사업 강화 등

장 기 비 전	·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 역할 제고		
목 표 설 정	· 업무상 재해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· 적용·징수체계의 효율화		
주 요 과 제	수혜범위 확대 및 재정안정	요양서비스 수준제고	재활사업의 활성화
주 요 추 진 과 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적용대상 확대 - 요율체계의 합리화 - 가입·수납을 제고 - 적정수준의 책임준비금 규모 추계 및 확보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장요양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- 요양업무처리절차 개선 -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 - 업무상 질병 판단의 전문성·객관성 제고 - 보험급여 부정수급 방지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재근로자 유형별 재활프로그램 운영 - 직장복귀 지원 강화 - 보험시설의 효율화·전문화 - 요양시설 확충 등

IV. 정책방향

1.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

- '05.1.1부터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중 면허업자가 행하는 공사, 5인미만 법인 농림어업에 대해 산재보험 확대적용됨에 따라
 - 적용확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입을 제고
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방안 마련 및 관계법령의 개정 추진
 - 적용방법(강제가입↔임의가입), 보험료 부담주체(사업주↔본인) 등 적용방법에 대해 노사가 의견대립
 -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(업무장소),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기초인 소득확인 파악 곤란 등의 어려움
 - ※ '04.8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71만명(임금근로자의 4.9%)
 - 골프장경기보조원 25천명, 학습지교사 150천명, 보험모집인 199천명, 레미콘지입차주 13천명 등

- 위험작업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
 - '04.1.29 산재보험법 개정하여 자영업자 가입근거 마련(중소기업사업주 범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 포함)

- '05년부터 “자동차를 이용하여 행하는 여객·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자영업자”는 산재 보험에 임의가입 가능

※ 화물지입차주 18만명, 개인택시업자 14만명, 개인용달업자 14만명 등

2. 고용·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체계 개선

○ '05년부터 시행되는 보험료징수법의 조기정착

- 5인미만 사업장 자진신고·납부(임금총액×보험료율)→부과고지(기준임금×근로자수×보험료율)

※ 부과고지대상 : 건설업·별목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, 연도중 성립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한 사업(14일 초과시 다음연도부터 부과고지) → 적용제외신청 가능하며, 부과고지 사업장은 확정정산절차 없음

-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세사업장 위탁, 신규가입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보험사무 대행지원금 지급기준 조정

· 특히 일용근로자 적용촉진 등 피보험자관리 강화를 위해 사무대행기관이 노력하도록 지원금 상향조정 등

-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 축소(건설업·제조업·수선업 등 모든 도급사업→건설업), 하수 급인 승인요건 완화 등

※ 하수급인이 면허업자, 보험료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체결 이외 요건(보험료미납부, 하도급공사 1억원이상 등)은 삭제

-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(“기타의 사업”에도 적용)

※ 현재 개별실적요율 대상 : ① 보험관계 성립 3년이상, ② 상시근로자 30인(건설업은 2년전 총공사금액 100억) 이상, ③ 기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

○ 산업구조의 변화·업종의 다각화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을 통합·세분화 등 지속 추진('04년 60개업종)

※ '04년도 『기타의각종사업(5/1000)』에서 『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(4/1000)』을 분리하여 별도요율 적용

○ 체납보험료 납부 상시독려 체제 구축으로 체납장기화 방지

3. 산재보험급여제도 합리적 개선

○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수준제고

- 최초 재해발생시부터 면담실시, 요양정보 제공, 최적의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상병고착화 방지(현장요양서비스 지원체계 도입)

※ 독일·스위스·미국 등에서 실시하는 "case management" 시범 추진 등

- 토달서비스를 활용한 요양보상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

- 요양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조정 및 의료기관 질 관리 방안 마련 등

- 업무상질병 인정의 객관성, 합리성 제고를 위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(근골격계질환, 뇌·심혈관질환, 정신질환질환 등) 개선

- 상근자문의사 확대, 전문간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요양관리 체계화

- 업무처리절차를 정형화·표준화하여 업무처리의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(재해조사 리스트업, 매뉴얼 제작활용 등)

○ 산재보험 급여체계 관련 제도개선 추진

- 장애등급판정기준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규정, 장애등급 체계의 비연속성 등으로 합리적인 장애판정 곤란함에 따라 장애등급평가기준 및 장애등급 체계 개선 추진

-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연구용역 등을 거쳐 연령계층별 최고·최저 보상한도제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추진
 - 간병상황, 대상자 파악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후 간병급여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
- 보상관련 고시의 적정화 : 최고·최저보상기준 금액, 간병료, 간병급여, 장의비 등

4.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강화

- 산재근로자의 직업·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재활, 직업·사회재활 등 총체적인 재활복지 서비스체계 구축
 - 제1차 재활사업 5개년 계획평가 결과를 토대로 “제2차 재활사업 5개년 계획(‘06~‘10)” 수립
 - ※ 주요내용 : 의료재활 선진화, 직업재활 활성화, 복지제도 개선, 재활사업 인프라 구축 등
- 산재장해자 직장복귀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추진(지급요건 완화, 지급대상 확대 등)
 - ※ 지급대상 :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 아닌 사업주(50인미만)로서 1~9급 산재장해인을 1년이상 고용한 사업주
 - ※ 1~3급 639,900원(월), 4~9급 426,600원(월)
- 산재근로자 직업재활훈련 체계 개편 검토
 - ※ 국회, 기획예산처 등에서 직업재활원(2개소) 훈련에 대한 효율성 저하, 전문성 부족 등 제기
-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의 경쟁력 제고 및 전문화 추진
 - ※ 병원별 특화방안 마련(재활전문센터, 직업병연구센터 등) → 연차적 추진(‘06~‘10),

특화된 재활전문산재병원(대구지역) 건립 추진

○ 요양시설 확충

- ※ 중증장애인 케어센터(화성 '06.12), 진폐요양시설(태백, '06.12), 안산진폐병동('05.8), 동해진폐병동('05.6), 장애인운동재활센터(인천, '06.12) 등

〈참고〉 산재보험 관련 고시 현황

고시명(고시번호)	고시내용			적용기간
2004년 산재보험요율 (2003-36, '03.12.30)	4/1000~408/1000(60개업종) 평균 14.8/1000			'04. 1. 1~'04.12.31
2004년 건설공사 노무비율 (2003-37, '03.12.30)	노 무 비 율	27%		"
	하도급노무비율	34%		
2004년 벌목업 노무비율 (2002-38, '03.12.30)	벌목재적량 1m ³ 당 12,454			"
요양급여산정기준 (2003-40, '03.12.30)	산재환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의 기준			
간병료 지급기준 (2004-34, '04.8.31)	간 호 사	50,360		'04. 9. 1~'05. 8.31
	간호조무사	36,539		
	전문교육과정 이 수 자	36,539		
	가 족· 기타간병인	34,977		
최고·최저보상기준금액 (2004-32, '04.8.31)	최 고	151,249(1일)		'04. 9. 1~'05. 8.31
	최 저	41,869(1일)		
통상근로계수 (2000-24, '00.6.30)	73/100			'00. 7. 1부터
장의비 최고·최저금액 (2004-33, '04.8.31)	최 고	10,360,275		'04. 9. 1~'05. 8.31
	최 저	7,078,875		
기준임금 (2003-44, '03.12.31)	월 급	1,301,760		'04. 1. 1~'04.12.31
	시 간 급	5,760		
중소기업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임금 (2002-39, '03.12.30)	구 분	임금액(월)	평균임금(일)	'04. 1. 1~'04.12.31
	1등급	1,110,600	37,020	
	2등급	1,650,000	55,000	
	3등급	2,190,000	73,000	
	4등급	2,760,000	92,000	
	5등급	3,300,000	110,000	
	6등급	3,840,000	128,000	
	7등급	4,374,000	145,800	
간병급여지급기준 (2004-35, '04.8.31)	상시간병	34,977		'04. 9. 1~'05. 8.31
	수시간병	23,318		
직장복귀지원금 (2003-8, '03.6.30)	제1~제3급	639,900원(월)		'03. 7. 1부터
	제4급제9급	426,600원(월)		